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6. 22(목) 10:00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검 토 보 고 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 I.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25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5. 31.
- 라. 회부일자 : 2023. 5. 31.

##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금천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III. 주요내용

- 가. 결산개요
- 나. 세입·세출의 결산
- 다. 재무제표
- 라. 성과보고서
- 마. 결산서 첨부서류

## IV. 참고사항

###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제150조(결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 관련서류 : 2022회계연도 결산서(안) 및 결산검사 의견서

## V. 검토내용

### 1. 금천구 결산 총괄

#### 가. 2022회계연도 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C=A-B)
합 계	839,987,276,701	903,992,899,416	676,766,981,182	227,225,918,234
일반회계	821,824,651,001	887,199,647,186	667,761,923,172	219,437,724,014
특별회계	18,162,625,700	16,793,252,230	9,005,058,010	7,788,194,220

회 계 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현년도 채무상환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합 계	52,968,679,616	21,535,322,570	-	21,284,764,096	△550,768,166		131,987,920,118
일반회계	50,768,679,616	20,349,055,030	-	21,251,764,906	△550,768,166		127,618,992,628
특별회계	2,200,000,000	1,186,267,540	-	32,999,190	-		4,368,927,490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03,992,899,416원으로 예산현액 839,987,276,701원보다 64,005,622,715원이 더 수납됨.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의 75%인 676,766,981,182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7,225,918,234원임.

이 중 명시이월비 52,986,679,616원, 사고이월비 21,535,322,57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0,733,995,930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 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31,987,920,118원 임.

#### 나.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계	기편성예산	추경재원조정액	비 고
합 계	131,987,920,118	74,652,631,000	57,335,289,118	
일 반 회 계	127,618,992,628	68,215,001,000	59,403,991,628	
특 별 회 계	4,368,927,490	6,437,630,000	△2,068,702,510	

2022년 순세계잉여금은 131,987,920,118원으로서 2023년도 예산에 기편성된 일반회계 68,215,001,000원과 특별회계 6,437,630,000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59,403,991,628원과 특별회계 △2,068,702,510원을 합한 57,335,289,118원이 2023년도 추경재원으로 편성 가능한 금액임.

#### 다.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지출잔액(D=A-B-C)
합 계	32,473,993,000	7,256,904,000	4,416,247,850	-	2,840,656,150
일 반 회 계	32,333,993,000	7,256,904,000	4,416,247,850	-	2,840,656,150
특 별 회 계	140,000,000	-	-	-	-

202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2,473,993,000원으로서

전년도 15,715,733,000원보다 16,758,260,000원 증가하였으며, 「화물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외 28건으로 7,256,90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416,247,85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2,840,656,15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함.

### 라. 기금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38,957	1,003	10,938	9,934	39,960
남북교류협력기금	101	52	52	-	153
재난관리기금	7,662	△849	3,978	4,827	6,8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303	497	497		17,800
중소기업육성기금	5,170	742	3,839	3,097	5,912
청년미래기금	1,532	528	528	-	2,060
자활기금	1,049	△133	26	159	916
노인복지기금	353	△1	6	7	352
양성평등기금	456	5	55	50	461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490	△13	25	38	477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290	19	26	7	309
옥외광고발전기금	1,138	△4	160	164	1,134
도로굴착복구기금	2,484	207	1,682	1,475	2,691
식품진흥기금	929	△46	64	110	883

본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말 38,957,445,185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0,937,544,445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9,934,459,692원이고  
 차인잔액은 39,960,529,938원임.

## 2. 기획경제국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 가. 세입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B/A)
계	474,662,068,001	552,538,733,552	536,249,362,142	97.05%
기 획 예 산 과	319,170,210,001	368,613,600,822	368,613,600,822	100.00%
지 역 경 제 과	17,875,861,000	18,068,275,560	18,062,630,200	99.97%
일 자리 청 년 과	3,170,097,000	3,189,085,900	3,189,085,900	100.00%
재 무 과	3,976,730,000	5,222,285,650	5,221,064,150	99.98%
세 무 1 과	127,651,685,000	154,387,421,220	138,470,083,870	89.69%
세 무 2 과	2,817,485,000	3,058,064,400	2,692,897,200	88.06%

- 202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입 예산현액은 4,746억 6,206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25억 3,873만 3천원, 세입결산액은 5,362억 4,936만 2천원으로 징수율은 97.05%임.

## 나. 세출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	비율(%)
계	97,436,392,300	47,144,005,674	14,606,354,210	6,163,884,898	29,522,687,518	30.30
기획예산과	33,796,670,000	7,610,293,798	48,500,000	-	26,137,876,202	77.34
지경제과	47,962,897,900	28,691,671,904	10,693,000,000	6,013,065,878	2,565,160,118	5.35
일자리청년과	14,038,961,400	9,441,568,592	3,864,854,210	146,534,480	586,004,118	4.17
재무과	500,067,000	450,642,670	-	-	49,964,330	9.99
세무1과	463,001,000	401,400,400	-	4,284,540	57,316,060	12.38
세무2과	674,795,000	548,428,310	-	-	126,366,690	18.73

○ 202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출 예산현액은 974억 3,639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471억 4,400만 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6억 635만 4천원, 보조금반납금은 61억 6,388만 4천원, 집행잔액은 295억 2,268만 7천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은 30.3%입니다.

### 1) 다음연도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28,996,978	23,340,308	8,516,855	11,159,904	
지역 경제과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시설현대화 전환사업)	18,417,170	14,692,365	4,115,481	9,797,984	(연도내 지출불가) '2212 공종별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기성금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지역 경제과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주차환경개선)	5,094,664	3,693,215	2,861,085	<b>815,016</b>	(연도내 지출불가) '22.12 공종별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기성금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지역 경제과	호우피해 전통시장 전기설비 복구지원	80,000	16,760	-	<b>80,000</b>	(연도내 지출 불가)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으로 연도 내 공사준공까지 진행이 불가
일자리 청년과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34,500	9,000	9,000	<b>25,500</b>	(집행시기 미도래) 접수 후 3개월간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하므로 10~12월 접수분은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일자리 청년과	금천 청년꿈터 신축	5,370,644	4,928,968	1,531,289	<b>441,404</b>	(집행시기 미도래) '23. 9월 공사준공 예정으로 관급 자재 구매 및 공사설계 변경시 공사 비 증액분 집행을 위해 이월

○ 기획경제국 명시이월사업은 5건 111억 5,990만 4천원임

<사고이월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b>5,420,644</b>	<b>4,977,468</b>	<b>1,531,289</b>	<b>3,446,449</b>	
기획 예산과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50,000	48,500	-	<b>48,500</b>	실시설계 중(도로과) - 신안산선 출입구 타당성 조사 용역
일자리 청년과	금천 청년꿈터 신축	5,370,644	4,928,968	1,531,289	<b>3,397,949</b>	'23.9월 공사준공 예정으 로 원인행위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다음연도 공사 비로 활용하고자 함.

○ 기획경제국 사고이월사업은 2건 34억 4,644만 9천원임.



## 2) 예산전용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사 유
				감액	증액	
<b>기획경제국</b>			<b>2,920,186</b>	<b>161,539</b>	<b>161,539</b>	
기 획 예 산 과	기관공통운영비 지 원	207-01 연구용역비	250,000	59,500	0	신천~신림선 사전 타당성 조사 검토용역 협약에 따라 사업주관 지자체에 사업비 전출
	기관공통운영비 지 원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0	0	59,500	
	효율적 공모사업 운 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0	16,000	0	공모사업 관리시스템 개발 에 따른 예산전용
	효율적 공모사업 운 영	207-02 전산개발비	0	0	16,000	
지 역 경 제 과	전 통 시 장 활 성 화 지 원	201-01 사무관리비	11,200	7,982	0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지원 예산부족분 전용
	전 통 시 장 공 동 배 송 서 비 스 운 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6,252		7,982	
	전 통 시 장 활 성 화 매 니 저 데 이 운 영	201-01 사무관리비	5,000	1,200	0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지원 예산부족분 전용
	전 통 시 장 공 동 배 송 서 비 스 운 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7,136	0	1,200	
	전 통 시 장 활 성 화 지 원	201-02 공공운영비	53,720	2,902	0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지원 예산부족분 전용
	전 통 시 장 공 동 배 송 서 비 스 운 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4,234	0	2,902	
	일 자 리 창 출 과	금 천 일 자 리 주 식 회 사 운 영 및 지 원	307-05 민간위탁금	1,557,883	15,000	0
금 천 일 자 리 주 식 회 사 운 영 및 지 원		207-01 연구용역비	0	0	15,000	
동네방네 금천 희망일자리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13,896	56,750	0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의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
지 역 방 역 일 자 리 사 업 추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0,250	0	56,750	
동네방네 금천 희망일자리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000	205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의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
지 역 방 역 일 자 리 사 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615		205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사유
				감액	증액	
일자리 청년과	청춘빌딩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3,000	2,000	0	청춘빌딩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예산 전용
	청춘빌딩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0	0	2,000	

### 3) 집행잔액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비율 (B/A)	사유별					예비비
				보조금 정산잔액	낙차	찰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 잔액	
<b>계</b>	<b>97,436,932</b>	<b>29,522,687</b>	<b>30.3</b>	<b>280,801</b>	<b>1,944,232</b>	<b>219,616</b>	<b>2,000,949</b>	<b>25,077,089</b>	
기획예산과	33,796,670	26,137,876	77.3	0	16,566	76,029	968,192	25,077,089	
지역경제과	47,962,898	2,565,160	5.3	219,344	1,921,554	24,260	400,002	0	
일자리 청년과	14,038,961	586,004	4.2	57,372	6,112	119,327	403,193	0	
재무과	500,607	49,964	10.0	0	0	0	49,964	0	
세무1과	463,001	57,316	12.4	4,085	0	0	53,231	0	
세무2과	674,795	126,367	18.7	0	0	0	126,367	0	

- 202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집행잔액은 295억 2,268만 7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0.3%임.
-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 8,080만 1천원, 낙찰차액이 19억 4,423만 2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1,961만원 6천원, 지출잔액 20억 94만 9천원, 예비비 250억 7,708만 9천원임.

## 다. 기금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서명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b>계</b>		<b>24,005,237</b>	<b>1,766,712</b>	<b>4,864,026</b>	<b>3,097,314</b>	<b>25,771,949</b>
통 합 재 정 안정화기금	기획예산과	17,303,140	496,847	496,847	0	17,799,987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지역경제과	5,169,675	742,111	3,839,425	3,097,314	5,911,786
청 년 미 래 기 금	일자리청년과	1,532,422	527,754	527,754	0	2,060,176

- 202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일자리청년과 청년미래기금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48억 6,402만 6천원이며 사용액은 30억 9,731만 4천원으로 최종 2022년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57억 7,194만 9천원임.

## 라. 예비비 결산현황

### 1) 801-01 일반예비비

(단위 : 천원)

부서명	예 산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지출사유
	단 위	세 부	통계목					
<b>합 계</b>				<b>316,200</b>	<b>313,800</b>	<b>0</b>	<b>2,400</b>	
지 역 경 제 과	지 역 경 제 인프라구축	풍수해 피해 소 상 공 인 지 원 금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 상 금	316,200	313,800	0	2,400	2022년 8월 집중호우 침수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801-01)

- 202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일반 예비비 지출액은 3억 1,38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240만원임.

2)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지출사유
	단위	세부	통계목					
<b>합 계</b>				<b>1,222,022</b>	<b>783,276</b>	<b>0</b>	<b>438,746</b>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인프라 구축	금천구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27,002	26,801	0	201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임시회의 결과(2021.1.21.) 자치구 재난지원사업 실시 결정에 따라 자원 마련
			사무관리비	4,000	0	0	4,000	
			민간인재 복구활동 보상금	327,500	119,000	0	208,500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민간인재 복구활동 보상금	156,900	156,600	0	300	
일자리 청년과	청년정책 실행력 강화	청년 자립기 반추	사무관리비	6,620	1,375	0	5,245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임시회의 결과(2021.1.21.) 자치구 재난지원사업 실시 결정에 따라 자원 마련
			민간인재 복구활동 보상금	700,000	479,500	0	220,500	

- 202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액은 7억 8,327만 6천원이며 지출잔액은 4억 3,874만 6천원임.

### 3. 검토의견

- 본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사후 의회의 승인 절차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음으로써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5년 평균 증가율을 보면 세입증가율이 세출 증가율보다 0.8% 높으며, 매년 많은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및 초과세입금이 원인임
- 집행부에서는 초과세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의 정확한 세수 추계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일부 예산 전용내용을 보면 당초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음에도 적정 편성을 못한 것으로 전용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예비비 사용계획 중 예측이 어려운 재난 관련도 있으나 일부 예비비 지출의 경우 정확한 편성의 결여로 불용된 경우도 있으며 향후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고 집행 시에는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할 것임.

- 기획경제국 세출결산 내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대체로 걱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붙임 관계 법령 1부. 끝.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